

양주회천 A25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광고일 [2026.09.21.]

■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92 양주회천 A25BL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광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광고**입니다.
- 이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광고일(2026.09.21.) 현재 양주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양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26.10.12.(월)~10.16.(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 내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시. 미성년은 2007.09.22. 이후 출생자(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1961.09.21. 이전 출생자)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6.09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사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m²)						공급 호수	모집 예비자	영구임대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26A	26.10	15.2009	41.3009	2.4738	11.3480	55.1227	291	500	2501 2505 2507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	'26.9월
26A1 (주거약자)							61	120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26A1형(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일부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벽걸이에어컨, 가스쿡탑 등)이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적용 구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26A 26A1	「가」군	2,764,000	138,000	2,626,000	55,040	(+) 5,000,000	7,764,000	30,040
						(-) 1,000,000	1,764,000	57,950
	「나」군	19,524,000	976,000	18,548,000	137,590	(+) 16,000,000	35,524,000	57,590
						(-) 15,000,000	4,524,000	181,34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27년 계약시 임대조건 변경 예정)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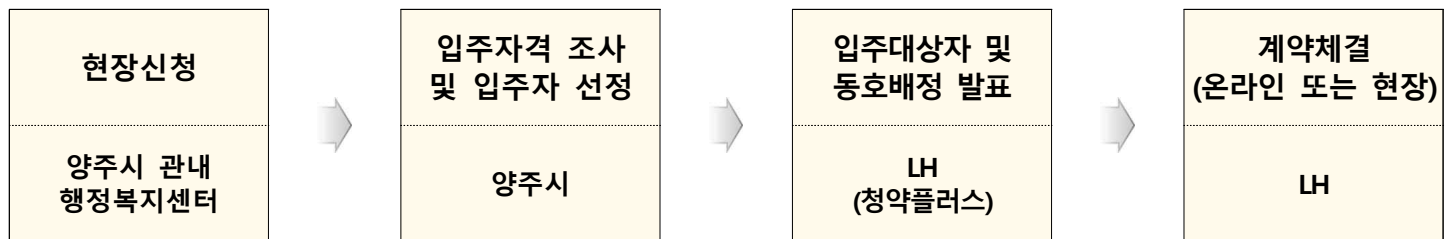
2.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26.10.12(월) ~ '26.10.16(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7.03.09(화) 17:00 이후 ※ 양주시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27.03.23(화) ~ '27.03.24(수) ※ 현장 계약장소 별도 안내

- 신청접수는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1.)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 <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 <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 <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26A1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되며, 개별 자동차가액이 총 자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기준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60%	245,000,000	45,420,000
		1인	7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50%	245,000,000	45,420,000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나. 국가유공자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80%	245,000,000	45,420,000
		1인	9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70%	245,000,000	45,420,000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타. 장애인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110%	245,000,000	45,420,000
		1인	12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100%	245,000,000	45,420,000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자녀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

		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입주자격 내용 중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함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u>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u>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양주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1.) 현재까지 연속하여 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양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 ~ 5년 미만	24	
	5 ~ 10년 미만	26	
	10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1.) 기준 연령을 말함
	40 ~ 50세 미만	21	
	50 ~ 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무주택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 ~ 2인	24	▶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공고문 [3. 신청자격]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 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6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3. 양주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양주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양주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6.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 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 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1통
해당자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예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에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7.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1600-1004)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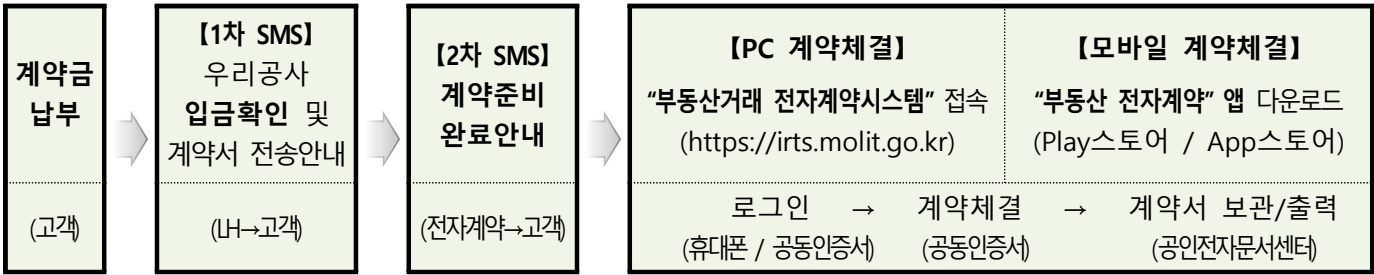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7.03.23(화) 10:00 ~ 2027.03.24(수) 16: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 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 계약기간 : 2027.03.23(화) 10:00 ~ 2027.03.24(수) 16: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평일 업무시간 내)
- 계약장소 : 향후 발송될 '계약체결 안내문' 참조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u>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구분	유의사항
공급 일정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내·외부 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1호선(경원선)이 지나가며, 화물열차 및 전철의 통행으로 소음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 아파트 남서측 방향 약 300m 내외 거리에 제척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남측 약 800m 내외 거리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 단지 내·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국민임대주택이 1,002세대, 영구임대주택이 47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쪽으로는 1호선(경원선)이 위치하여 전철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쪽으로는 고덕로 도로(고가도로 포함)가 위치하여 인접동(2501동, 2503동, 2505동) 세대는 소음 및

구분	유의사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또는 법면 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옹벽 등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2501, 25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외부도로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출입구에 인접한 동(2501동, 2502동, 2503동, 2505동, 2506동 등)은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경사로 등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도로, 보도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BI 로고·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지경계 부분에 조경석, 식수대, 울타리,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 보행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671대, 지상 42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6대이며, 총 1,106대 중 33대는 장애인 주차장, 58대는 경형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에 완속충전기 44대 지상에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0대가 설치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나, 이용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는 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협의 및 운영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안전운행과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이 설치되며, 주차공간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역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으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5층 규모입니다. • 당 아파트는 중복도형으로서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2501동은 서향(1~5호), 동향(6~12호)으로 시공됩니다. • 2505동, 2507동은 서향(1~7호), 동향(8~12호)으로 시공됩니다. • 2501동 필로티(1층), 2502동 필로티(1층), 2503동 필로티(1층), 2504동 필로티(1층) 어린이집, 2505동 필로티(1층) 2506동과 연결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2506동 필로티(1층), 2507동 필로티(1층), 2508동 필로티(1층), 2509동 필로티(1층)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도서관), 2510동 필로티(1층)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연결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우편함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제품사양에 따라 미서기창 탈착 후 발코니에 반입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발코니에는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일부 발코니 입상관 상부 주변 천정에 단차가 생겨 마감됩니다. • 주거동 주출입구는 주로 치장벽돌(와이드벽돌)으로 시공되며, 일부 석재질감의 도장 혹은 미장 등으로 마감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지붕은 전체동이 평지붕으로 계획되었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 •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내부 벽체는 건식 세대경계벽 및 세대 각실간 벽은 석고보드 복합판넬, 이외벽(복도↔세대내부, 발코니↔거실,침실)은 경량콘크리트 패널로 시공되어 벽부착물 설치등 고정용 못을 박을 때 주의를 요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502동, 2506동, 2508동 옥상층에는 옥상 정원이 설치되며 각각 2501동, 2505동, 2507동과 연결되는 옥상 브릿지가 설치되며, 조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비상대피용 방화문이 설치되어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해당시설 이용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는 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배수펌프 가동으로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전기실, 발전기실 설치위치 : 2501동, 2503동 주변 지하]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설치위치 : 2501동, 2503동 주변 지하]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생활자원보관소(총 9개소, 상가 1개소 포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생활자원보관소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각 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채광·환기창의 설치여부와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쿡탑은 전기 하이라이트 방식이 적용되며 26, 29형은 2구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미설치되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구분	유의사항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과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실내환기를 위한 전열교환장치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드레인을 위한 바닥 배수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배수트랩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26, 29형 발코니는 건식 발코니로 수전 및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는 입면분할창으로 하부 창호의 개폐가 불가하여, 이사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복도 PD내부에 설치예정입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내부에는 PD점검구 대신 점검홀 설치) • 26형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수도 등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여 조회함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예정되며, 일부 인접 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외부 마감사양은 제조사가 상이함에 따라 각 동별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2501, 2503, 2505, 2507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01, 2503, 2505, 2507, 2509, 2510동 옥상층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됩니다. • 세대분전반은 현관입구 벽면에 매입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어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등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대피공간)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부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 부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생활자원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대비용 동작감지기는 전세대 거실 또는 침실 1개소에 설치됩니다. •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단말기(비디오폰7"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구분	유의사항
	연동), 제어서비스(환기제어,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통화서비스(욕실비상콜:주거약자세대에 한함),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 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복도형)에는 E/V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 복도에는 차압감지관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2501동, 2503동, 2505동, 2507동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합니다. • 공청 및 위성 안테나의 경우, 2503동 옥탑층에 설치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지하주차 구간 높이는 2.4m입니다. ■ 학생 배치 관련 사항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초등학생은 도둔초, 중학생은 회천중학군, 고등학생은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원거리 통학,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중학군(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천중학군은 덕계중, 덕정중, 고암중, 회천중, (가칭)회천4중을 의미합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양주회천 A-25BL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현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인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유의사항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주회천 A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주)금강주택 (211-81-81882) (주)한일개발(주) (129-81-45758) (주)성일기계(주) (120-81-46027) (주)두원이에프씨(주) (214-81-04884) (주)영승전력(주) (217-81-15115) (주)한국해양기술 (220-81-27790) (주)대보정보통신(주) (135-81-19406) (주)성민전기(주) (119-86-32979) (주)대상건설(주) (126-81-45685) (주)건국이엔아이 (206-81-51902) (주)진진 (539-88-00753) (주)시티건설 (211-88-79240) (주)제후건설(주) (408-81-25922)	-	(주)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나라기술단 (주)해우이엔지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내·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수건걸이 높이조정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좌변기 옆 여유공간	좌변기 옆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거실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잡한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 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 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 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5. 문의처

문의처

- 양주시청 및 양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1



경기도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